

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5. 12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, 주민감사 청구의 활성화 및 제도 보완으로 청구인수를 법령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190명 이상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

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
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“지방자치법시
행령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300명”을 “19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u>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</u>	<u>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</u>	제명 띄어쓰기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<u>300명</u> 이상으로 한다.	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190명</u>----- -.	법개정에 따른청구 주민의 수 개정